



KOFST

과학기술 르네상스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와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일반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촉진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안내집



KOFST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안내집



KOFST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KOFST |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Contents

I. 사업개요	4
1. 목적	4
2. 근거법령	4
3. 주요연혁	4
4. 추진체계	5
5. 지원방향	5
6. 활용과제 및 분야	6
7. 초빙대상국가	6
8. 초빙대상 및 자격	6
9. 활용 대상기관 및 방법	6
10. 활용 기간	7
11. 지원 내용	7
12. 지원 방식	8
13. 심사 및 평가	8



KOFST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안내집

Ⅱ. 사업추진절차 9

Ⅲ. 사업안내 10

1. 사업신청 10
2. 심사 및 선정 12
3. 입국보고 및 협약 체결 13
4.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6
5. 활용계획 변경 및 해외출장 등 19
6. 주관연구기관의 준수 사항 22
7. 연구결과 사후 관리 22
8. 문의처 23

Ⅳ. 사업실적 (1994~2012년) 24

1. 해외고급과학자 선정 현황 24
2. 국가별/분야별 선정 현황 24
3. 기관별 선정 현황 26



I. 사업개요

1. 목적

-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인 과학자 및 해외교포 과학자를 초청·활용
 - 연구개발단계에서 최신 과학기술 조기 습득을 통한 선진기술 개발
- 중견 해외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공동 참여토록 하여 연구개발 수준 제고
 - 공동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인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 국내 연구기관·대학·산업계의 부족한 우수 연구인력을 중점 보완
 - 산학연의 균형적인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2.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추진)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3. 주요연혁

1993년 7월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 전략부문으로 해외고급과학두뇌유치·활용(Brain Pool) 제도 계획 수립
1994년 1월	Brain Pool 제도 설치, 운영방안 확정
1994년 2월	Brain Pool 제도 시행
2002년 10월	Brain Pool 사업 통합운영 기본방안 수립
2003년	해외고급과학두뇌유치·활용(Brain Pool) 사업 통합운영 기본방안 - Brain Pool 사업과 과학기술인력교류사업 통합
2003년 2월	Brain Pool 사업 통합에 따른 운영약관 개정
2004년 10월	Brain Pool 사업 주관 부처 변경 -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 →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
2009년 7월	한국연구재단 출범으로 업무이관
2010년 11월	Brain Pool 사업관리 전담기관을 과총으로 지정, 시행
2011년 4월	Brain Pool 사업 운영지침 개정
2013년 1월	Brain Pool 사업 관리운영지침 전면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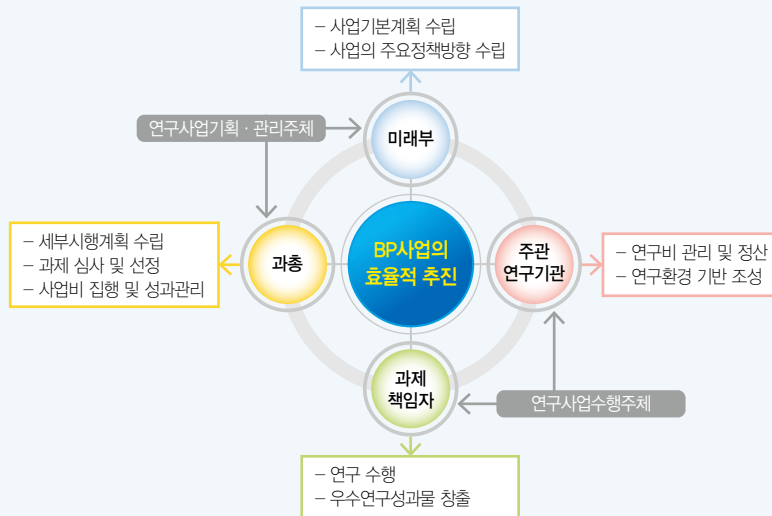
4. 추진체계

■ 연구사업기획 및 관리주체

- 미래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 주요정책방향 수립
- 과 총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 심사 및 선정, 사업비 집행 및 성과관리
(해외고급과학자 선정, 평가 등 사업운영 및 관리와 사업비 지원, 협약 체결 및 자금 관리, 결과평가 등)

■ 연구사업 수행주체

- 주관연구기관 : 연구비 관리 및 정산, 연구환경 기반 조성
- 과제책임자 : 해외고급과학자와 연구 수행, 우수연구성과물 창출



5. 지원방향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과제로서, 연구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중견 해외과학자를 초빙·활용하여 국내 과학기술계 저변확대
-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WCI¹⁾, WCU²⁾, GRL³⁾과 같은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력 pool 제공
- 산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할당제를 적용, 산학연의 균형적인 발전 및 시너지 효과 창출

¹⁾ WCI(World Class Institute) : '세계수준의 연구센터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 추진

²⁾ WCU(World Class University)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 추진

³⁾ GRL(Global Research Laboratory) : '글로벌 연구실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 추진



6. 활용과제 및 분야

□ 활용과제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국가전략적 추진과제로써, 해외고급과학두뇌 활용이 필요한 과제

□ 활용분야 : 과학기술 모든 분야

분 야	세부분야
기 초	수학 · 물리학 · 화학 · 생물 · 지구과학 · 측정 · 표준 · 전문
기계 · 소재 · 항공우주	기계 · 선박 · 항공 · 우주 · 소재
전기 · 전자 · 정보통신	전기 · 동력 · 전자 · 컴퓨터 · 통신 · 광기술 · 응용물리
화공 · 생명과학	응용화학 · 화공 · 생명공학 · 농수산 · 보건
자원 · 해양 · 환경 · 건설, 에너지	자원 · 해양 · 환경 · 건설, 원자력
과학기술정책 및 기타분야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정책/사회 등

7. 초빙대상국가

□ 전 세계 국가

8. 초빙대상 및 자격

-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 과학기술자
 - 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9. 활용 대상기관 및 방법

- 활용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
 - 특정 산업체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설립되고, 그 특정 산업체를 위하여 운영되는 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기관 지원 기준에 따름
 - 기업부설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 활용방법 : 기존 또는 신규 연구개발팀에 합류시켜 공동연구 수행
- 활용기간 동안 해당 활용기관에서 Full-Time 근무
 - 대학에서 초빙할 경우 필요에 따라 사업목적에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1과목 이내 강의 허용, 각종 학술회의·세미나 참석 및 발표, 타 기관에 대한 일시적 기술자문, 교육기부 등은 가능

10. 활용 기간

- 3개월 이상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활용기간 만료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활용기간은 12개월 기준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
 - ※ 3년 차 : 연구지원비의 50% 주관연구기관 부담

11. 지원 내용

- 연구지원비
- 해외고급과학자의 연구경력 및 해당 국가에서의 현지보수, 과학논문 인용색인지수(SCI)저널 논문게재 실적, 특허 건수, 활용의 필요성 및 활용 정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비의 90%를 지원함(10% 기업부담)
 - ※ 대기업의 경우 연구지원비의 50% 매칭 필수
- 유치경비(항공료, 이사비, 상해·질병보험료 등)
- 항공료 : Economy Class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며, 활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왕복항공료 지원
 - 이사비 : 활용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해외고급과학자의 지역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출국 시에 지급
 - 상해·질병보험료 : 해외고급과학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
 - 주관연구기관이 보험회사 상품 활용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외고급과학자 부담분 보험료도 인정
 - 숙소지원비 : 주관연구기관에서 숙소제공이 어려운 경우, (나)군 이상의 해외고급과학자에 한하여 일부 지원 가능



12. 지원 방식

- ▣ 연구지원비 : 주관연구기관이 해외고급과학자 입국 후 입국보고서를 제출하면 전문기관(과총)과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지원비 지급
 - 주관연구기관은 해외고급과학자에게 매월 월정액 지급
- ▣ 유치경비 : 협약체결 후 연구지원비와 같이 지급
 - 주관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연구지원비+유치경비)를 활용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고 전문기관(과총)에 잔액 반납

13. 심사 및 평가

- ▣ 선정심사
 -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심사
 - 신청과제의 타당성 및 해외고급과학자의 적격성 검토
 - 과제와 해외고급과학자를 심사하여 평점 70점 이상의 과제를 운영위원회에 추천
 -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심사
 -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의 추천자료 검토
 -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지원비, 초빙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외고급과학자 최종 확정
 - 탈락 과제는 과제신청서를 보완 또는 다른 과제 · 해외고급과학자로 대체하여 재신청 가능
 - 활용기간 연장 시에도 신규신청과 같은 기준 및 절차로 심사
 - 해외고급과학자 선정 추진절차

구 분	추진절차	주요내용
과제 공모	사업공고/접수	– 지원과제 공고 – 과제신청서 접수
과제심사 (3단계)	요건 심사	– 초빙대상, 자격 및 구비서류 심사
	전문가 심사	– 기초,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공생명, 자원해양 · 에너지 등 5개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종합 심사	– 각 분야별 심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심사

- ▣ 결과평가 : 해외고급과학자 활용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활용실적에 대해 해당 연구분야의 국내 전문가 3인에게 평가받고, 평가결과를 적용

II. 사업추진절차

구 분	추진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계획수립	사업계획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미래부 과총
↓			
과제 공모	사업공고/접수	- 지원과제 공고 - 과제신청서 접수	과총
↓			
과제심사 (3단계)	요건 심사	- 초빙대상, 자격 및 구비서류 심사	
	전문가 심사	-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	
	종합 심사	- 운영위원회	
↓			
선정통보	선정결과통보	- 신청 주관연구기관에 선정결과 통보 - 사업비 배정내역 통보	주관 연구기관
↓			
결과협약	협약결과 회신서 제출	- 해외고급과학자와 초빙요건 협의 - 협약결과 과총에 회신	
↓			
입국보고	입국보고서 제출	- 해외고급과학자 입국 후 입국보고서 제출 - 협약내용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	과총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 과총과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 체결 - 사업비(연구지원비, 유치경비) 지급	주관 연구기관
↓			
과제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종료 후 활용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 국가 R&D 성과관련 자료 제출	과총
↓			
사업관리 및 평가	사업관리 결과평가 사업성과 관리	- 과제별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관리 - 결과보고서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활용성과 및 통계산출 등 사업관리	과총



Ⅲ. 사업안내

1. 사업신청

□ 신청방법

- 해외고급과학자 활용을 필요로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온라인 신청(www.brainpool.or.kr)
 - 주관연구기관에서 신청과제에 적합한 해외고급과학자를 직접 추천



활용을 원하는 해외고급과학자를
신청기관(과제책임자)이 직접 추천



과제, 해외고급과학자 관련자료 준비



과제책임자가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과제 및 초빙대상자 신청서
 - 과제 신청서
 - 해외고급과학자 신청서
 - 인적사항, 이력서(연구경력 및 실적 포함)
 - 과학논문인용색인(SCI) 지수저널 수록논문 게재편수 및 논문목록
 - 특허권(특허 건수 및 특허 취득번호 명기)
 - 최종학위증명서, 최종경력 및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 해외고급과학자의 초빙 수락서
 - 산기협 발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중기청 발행 중소기업사실확인원 및 회사 소개 책자(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Q BP사업에서 과제란 무엇인가요?

- A** • 정부 · 지자체 · 기업 등에서 수주받은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보된 과제를 의미하며,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 실용화를 위한 자체 과제도 해당됩니다.
- 본 사업은 과제책임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해외고급과학자 1인을 지원받아 연구성과 향상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Q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과학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및 교포과학자(외국국적)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한국국적 과학자의 경우 해외 체류 중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강의를 위한 해외과학자 초빙도 가능한가요?

- A** 본 사업은 R&D사업으로 강의만 전담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1과목 이내의 강의 또는 교육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는 가능합니다.

Q 대기업 부설연구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발표)으로 소속된 기업을 제외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박사학위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 A** 대학, 연구소의 경우 자격 미달로 지원이 어렵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현지의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 보유자에 한함)

Q 박사학위가 있어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 A**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학자는 자격 미달로 요건심사에서 탈락대상이며, 5년이 경과하였어도 Post-Doc.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기업부설연구소 제외)

Q 해외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나요?

- A** • 본 사업은 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외현지의 공동연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해외고급과학자가 해외출장이 잦은 경우(활용기간의 10% 초과)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기간만큼 연구지원비 환수)

Q 사업신청을 해외과학자도 할 수 있나요?

- A** 신청 및 관련 보고서(입국, 활용변경, 결과보고 등) 등의 제출은 과제책임자가 합니다.



2.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사

- 활용과제와 해외고급과학자를 동시에 심사하며, 70점 이상 과제 중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과제 선정
- 심사절차 : 요건심사 → 전문가심사 → 종합심사

제1단계 : 요건심사

- 심사주체 : 전문기관(과총)
- 심사내용 : 활용대상기관 요건, 활용예정기간, 초빙대상 및 자격, 활동대상기관, 구비서류
※ 연내 활용예정기간, 과제신청서, 활용과제 세부추진계획서 유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여부, 과제책임자별 1인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여부, 지원신청서 입력사항(이력사항기재, 최종학위증명, 경력증명,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등



제2단계 : 전문가심사

- 평가주체 : 각 분야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
*①기초 ②기계 · 소재 ③전기 · 전자 ④화공 · 생명 ⑤자원 · 해양, 에너지 및 기타
- 심사 방법
— 각 위원회별로 평가자 점수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평가점수를 산출
— 평균 70점 이상 과제를 운영위원회에 추천
※ 신청과제와 직접 이해관계자는 해당 과제의 평가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함



제3단계 : 종합심사

- 평가주체 : 각 분야별 선정평가위원장, 기업계, 연구계, 미래부, 전문기관(과총)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 심사방법 :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추천된 과제를 검토하여 활용 과제 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지원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 결과를 전문기관(과총)이 주관연구기관, 해외고급과학자에게 통보
- 과총 홈페이지 및 브레인폴 홈페이지 게재

■ 초빙계약 체결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해외고급과학자와 선정내용(연구지원비, 활용기간 등)을 협의하여 초빙 계약 체결 및 전문기관(과총)에 협의결과 회신



3. 입국보고 및 협약 체결

□ 입국보고

- 시기 : 해외고급과학자가 입국 후 7일 이내
- 방법 : 홈페이지(www.brainpool.or.kr) → 과제책임자 로그인 → 보고서제출 / 입국보고서 작성
- 제출자료
 - 입국보고서
 - 해외고급과학자의 여권사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확인 도장면 포함)
 - 서약서
 - 초빙계약서(주관연구기관과 해외고급과학자 간 체결)
 - BP사업 협약서(전문기관(과총)과 주관연구기관 간 체결)

□ 사업비 지급

- 연구지원비
 - 1년 단위로 지급
 - 해외고급과학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 해외현지의 보수, 평가위원회 점수(활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고려) 등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연구지원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책정되나 선정인원, 활용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등급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이 '특급'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 평점 90점 이상이고, 연구지원비 산정기준에 의거 '나'군에 해당될 때 운영위원회에 검토하여 '가'군 범위 내에서 연구지원비 조정 가능
 - 연구지원비는 해외고급과학자의 입국보고(협약체결) 후 주관연구기관으로 일괄 지급
 - 중소기업은 연구지원비의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
(예 : (다)군일 경우 500만원 중 450만원 BP사업 지원, 50만원 기업 부담)

《등급별 연구지원비 책정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지원액(월)	비 고
(가)군 (90점 이상)	6,000~10,000	※ (가)군은 특급에 해당 – 기관이 신청하면 심사하여 결정 – 필요한 경우 BP사업을 통해 최고수준의 과학자를 초빙할 수 있도록 유도
(나)군 (90점 이상)	5,500	
(다)군 (80~89점)	5,000	
(라)군 (70~79점)	4,500	
(마)군 (60~69점)	4,000	
(바)군 (50~59점)	3,500	
(사)군 (50점 미만)	3,000	

• 유치경비(항공료, 상해·질병보험료, 이사비)

– 지역·활용기간을 고려하여 책정기준에 의거하여 결정

– 지급받은 유치경비는 활용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고 잔액은 전문기관(과총)에 반납

※ 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항공료, 상해·질병보험료 책정기준》

(단위 : 천원)

지 역	신규선정(항공료+보험료)			기간연장시 보험료		
	3~6개월	6~9개월	10~12개월	3~6개월	6~9개월	10~12개월
일본, 중국, 대만	2,400	3,500	3,800	1,000	1,500	2,000
동남아시아	2,600	3,900	4,200			
인도, 서아시아, 중동	3,100	4,900	5,200			
북미(서부), 호주, 유럽, 러시아	4,100	6,900	7,200			
북미(중·동부)	4,600	7,900	8,200			
중남미, 아프리카	5,600	9,900	10,200			

– 항공료

- 지원대상은 해외고급과학자 및 배우자이며, 실제 활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배우자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음
- 항공료는 최단 직항로로 계산한 Economy Class 정액을 기준으로 왕복 항공료 1회 지원하고, 해외고급과학자가 자비로 구입한 항공료는 Economy Class 항공료와 비교하여 적은 요금을 적용하여 지원함
- 활용기간 변경(연장, 단축, 분리 등)으로 인한 일시귀국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음
- 해외고급과학자가 상해·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가족 2인 이내(배우자 포함)에서 귀국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음

– 상해·질병보험료 : 해외고급과학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

- 주관연구기관이 해외고급과학자를 위해 시중 보험회사 상품을 활용하여 가입한 상해·질병보험료
- 주관연구기관이 해외고급과학자를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외고급과학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도 인정

– 이사비 : 해외고급과학자의 실제 활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출국시 지원

《이사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지 역	지원액	지 역	지원액
일본, 중국, 대만	500	북미(서부), 호주, 유럽, 러시아	1,100
동남아시아	600	북미(중·동부)	1,300
인도, 서아시아, 중동	800	중남미, 아프리카	1,600

– 숙소지원비 : (나)군 이상의 해외고급과학자에 한하여 지원

- 주관연구기관이 임대차계약을 제출하여 지원 신청할 경우 전문기관(과총)에서 검토 후 일부 지원



Q 지원되는 사업비란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의 사업비란, 해외고급과학자에게 지원되는 연구지원비와 유치경비를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지원비 : 해외고급과학자의 월 체재비
- 유치경비 : 해외고급과학자의 항공료(6개월 이상 초빙의 경우 배우자 항공료 포함) + 상해·질병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가입 시 해외과학자 부담분 포함) + 이사비

Q 항공료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활용개시 1개월 이전 입국한 경우 입국항공료, 활용종료 1개월 이후 출국하는 경우 출국항공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이사비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 A**
- 활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지역별로 책정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이사비 지급은 활용종료 후 해외고급과학자의 귀국 시점에 지급하고, 실제 활용기간이 12개월 미만(조기귀국, 기간 단축 등)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 A**
- 해외고급과학자 연구지원비의 기업부담 비율(대기업 50%, 중소기업 1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해외고급과학자의 숙소(임차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지원비가 (나)군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과총)에서 숙소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서 지원되는 이외의 항목이 발생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구지원비 부족분, 4대 보험 가입시 회사부담분 등)





4.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결과보고

- 시기 : 활용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제책임자가 작성 및 제출
- 방법 : 홈페이지(www.brainpool.or.kr) → 과제책임자 로그인 → 보고서제출 /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및 활용성과 관련 증빙자료
 - 해외고급과학자의 출입국사실증명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사업비 정산서(연구지원비, 유치경비 등 증빙포함)
 - BP사업 활용 만족도 조사서

□ 결과평가 및 통보

- 전문기관(과총)은 결과보고서 접수 후 활용성과를 평가하여 평점 60점 미만(하위, 최하위)일 때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구분

구분 \ 구간	100~9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등급	최우수(S)	우수(A)	보통(B)	하위(C)	최하위(D)

- 결과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결과의 적용

평가결과	반 영
S등급	– 과제책임자가 후속연구 신청시 2년간 선정평가 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C등급	– 실사 및 과제책임자가 후속연구 신청시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또는 3년 참여제한 가능
D등급	– 실사 및 과제책임자가 후속연구 신청시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또는 3년 참여제한 가능





■ 사업비 정산

- 시기 : 활용종료 후 1개월 이내
- 방법 : 홈페이지(www.brainpool.or.kr) → 과제책임자 로그인 → 보고서제출 /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제출자료
 - 사업비 정산서
 - 연구지원비 온라인 송금영수증
 - 항공료, 이사비, 상해·질병보험료 관련 증빙영수증
- 정산 후 사업비 잔액은 전문기관(과총)에 반납
 - 숙소지원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매월 집행한 숙소임대료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고 잔액은 전문기관(과총)에 반납
 - 해외고급과학자가 활용을 중단하거나 공무로 인정받지 못한 해외 출입국 일수가 발생할 경우 유급휴가 일수에서 차감하고, 유급휴가 허용일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구지원비를 일할계산(휴일 포함 30일 초과 사용은 월할계산)하여 반납
 - ※ 휴가 사용일수 산정시 입·출국일(2일)을 1일(각0.5일)로 계산하며, 휴일 및 주관연구기관의 휴무일수는 제외
 - ※ 유급휴가 허용일수 초과분에 대한 연구지원비를 해외고급과학자에게 미환수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게 되므로 관련 행정처리에 철저





Q 결과보고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A** • 결과보고 기한(활용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외출입국사실증명원의 경우 BP사업으로 지원받은 전체기간을 포함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Q 활용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만 하면 되나요?

- A** •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평점 60점 미만일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의 요구시 BP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활용의 성과가 우수할 경우 성과확산을 위한 추가 홍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결과보고서 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BP사업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 A** 결과보고서 최종 평가가 최우수(평점 90점 이상)인 경우 과제책임자가 후속 과제신청시(2년 내) 선정평가 점수의 5%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며, 반대로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실사 및 후속 과제신청시(2년 내) 선정평가 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또는 2~3년간의 참여제한을 받습니다.

Q 결과 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대로 해외고급과학자를 충실히 활용하고, 공동연구성과(SCI급 논문발표, 특허출원, 기술 개발 등)와 MOU 체결 실적, 향후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비 정산시 반납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A** • 연구지원비는 활용이 중단된 경우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도 초과일수만큼의 연구지원비를 산정하면 됩니다.
- 유치경비는 지원기준에 의거 정산하면 됩니다.

Q 잔액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 A**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시고, 전문기관(과총) 담당자와 협의 후 지정계좌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Q 사업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 A** 모든 항목은 증빙 영수증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이사비의 증빙은 이사업체 영수증이 원칙이지만, 해외고급과학자에게 송금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도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5. 활용계획 변경 및 해외출장 등

□ 활용계획 변경

- 시기 : 과제책임자, 활용기간(연장, 단축, 분리 등)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에서 활용계획 변경 신청
- 방법 : 홈페이지(www.brainpool.or.kr) → 과제책임자 로그인 → 보고서제출 / 활용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 제출자료
 - 활용계획 변경 신청서
 - 연장 후 추진계획서
 - 기존과제의 성과자료(결과보고서)
- 전문기관(과총)은 이를 검토 후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장에 통보
 - ※ 활용기간연장 신청시 신규과제와 동일하게 심사

□ 해외출장 보고 : 지원기간의 10% 이내에서 시행 가능

- 시기 : 출장종료 후 7일 이내
- 방법 : 홈페이지(www.brainpool.or.kr) → 과제책임자 로그인 → 보고서제출 / 해외출장보고서 제출
 - 1회 10일 이하의 해외출장은 시행 후 사후 보고
 - 해외출장 누적일수가 지원기간의 10% 초과 또는 1회에 10일 초과와 해외출장은 해외출장계획서를 전문기관(과총)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제출서류
 - 해외출장보고서 : 상세한 일정별(시간별) 활동내용 포함
 - 여권 사본 : 입·출국일 확인도장 날인면 포함
 - ※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에도 사후에 해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공무로 인정함
 - ※ 해외출장에 대해 공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유급휴가에서 차감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반납해야 함

□ 유급휴가 보고 : 유급휴가 허용일수만큼 사용 가능

- 시기 : 유급휴가 사용시에도 사용 후 7일 이내
- 방법 : 홈페이지(www.brainpool.or.kr) → 과제책임자 로그인 → 보고서제출 / 유급휴가 사용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 유급휴가 사용보고서
 - 해외출국의 경우 여권 사본 : 입·출국일 확인도장 날인면 포함
 - ※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근무일(휴일, 기관휴무일 제외)만 계산하며, 허용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구지원비를 일할계산하여 전문기관(과총)에 반납해야 함
 - ※ 지원기간 중단 시 유급휴가 일수는 최종 지원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함



《해외고급과학자 유급휴가 허용일수》

활용기간	휴가일	활용기간	휴가일
3개월 까지	5일	8개월 까지	14일
4개월 까지	7일	9개월 까지	16일
5개월 까지	9일	10개월 까지	18일
6개월 까지	10일	11개월 까지	19일
7개월 까지	12일	12개월 까지	20일

【 유급휴가 사용지침 】

1. 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며, 기간연장의 경우 회차 단위로 사용하되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간연장의 경우 1회차 년도 20일, 2회차 년도 20일을 통합 또는 연속하여 사용불가
2. 유급휴가는 활용 시작과 종료 시점에 사용할 수 없음
- 휴가사용으로 활용기간을 단축해서 조기 귀국 불가
3. 허용된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일수만큼 연구지원비를 계산하여 환수
- 30일 이내 : 일할계산
- 30일 초과 : 월할계산(예 : 1회에 40일 사용 시 1개월 10일로 계산)
4. 일할계산의 경우 지원기관의 휴무일, 주휴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입출국일은 1일(각 0.5일)로 계산함





Q 활용계획의 변경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 A** • 과제책임자의 변경 또는 활용기간 연장·단축·분리 등이 필요할 경우에 활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는 과제책임자가 활용계획변경 신청서(증빙포함)를 온라인 제출하고, 전문기관(과총)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활용기간 분리의 경우 분리 사이의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과제 또는 해외고급과학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과제 또는 해외고급과학자의 경우 선정의 원인이 되는 주요사항으로 활용계획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취소(또는 중단) 후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출장과 휴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A** • BP사업 과제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적의 해외출입국만 출장으로 인정하며, 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출국은 유급휴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학생지도, 논문심사, 회의 또는 행사 참석 등은 사적 업무에 해당)
- 휴가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로 초빙기간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가 일수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Q 해외출장에 제약사항은 없나요?

- A** • 총 출장기간은 활용기간의 10% 이내에서 가능하고, 1회에 10일 초과 또는 활용기간의 10%를 초과한 출장의 경우 전문기관(과총)에 해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승인 없이 시행할 경우 유급휴가에서 출장일수만큼 제외하고, 유급휴가 일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일수 만큼 연구지원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Q 해외출장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 A** 해외출장은 과제책임자가 해외출장 보고서(증빙포함)를 온라인 제출하고, 전문기관(과총)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Q 해외출장시 입·출국일도 출장일수에 포함되나요?

- A** 입국일과 출국일 2일을 1일(각 0.5일)로 계산, 포함하면 됩니다.

예 : 월요일 출국, 금요일 입국의 경우 1일
월요일 출국, 토요일 입국의 경우 1일(반올림)
토요일 출국, 일요일 입국의 경우 0일



6. 주관연구기관의 준수 사항

▣ 지원 중단 및 자금 회수

- 다음의 각 호의 경우 해외고급과학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함
 -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단, 형사상 소추에 의함)
 - 해외고급과학자가 BP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목적 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지원기간 동안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한 경우 등)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BP사업으로 지원받는 연구과제가 단축, 중단된 경우
 - 주관연구기관장 또는 해외고급과학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해외고급과학자가 주관연구기관 또는 타 기관에 취업한 경우
 - 해외고급과학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적 연구활동이 곤란한 경우
 - 기타 협약의 해지 사유 발생시(현장점검 결과 등)
- 전 호의 사유로 인해 운영위원회가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경우 전문기관(과총)은 지급된 사업비를 주관연구 기관으로부터 회수

▣ 주관연구기관 준수 사항

- 본 사업에 의하여 해외고급과학자를 초빙·활용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산학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령,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
 - 해외고급과학자에게 숙소 제공
 - 해외고급과학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상해·질병보험에 가입
 - 해외고급과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관부담분 부담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부담

7.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 발표물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 가능

-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 제공

▣ 과제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은 소속기관(산학협력단)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

▣ 연구결과 발표물에는 아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정부(미래창조과학부)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영문표기 : This paper was studied with the support of the MSIP(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8. 문의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제협력팀》

☎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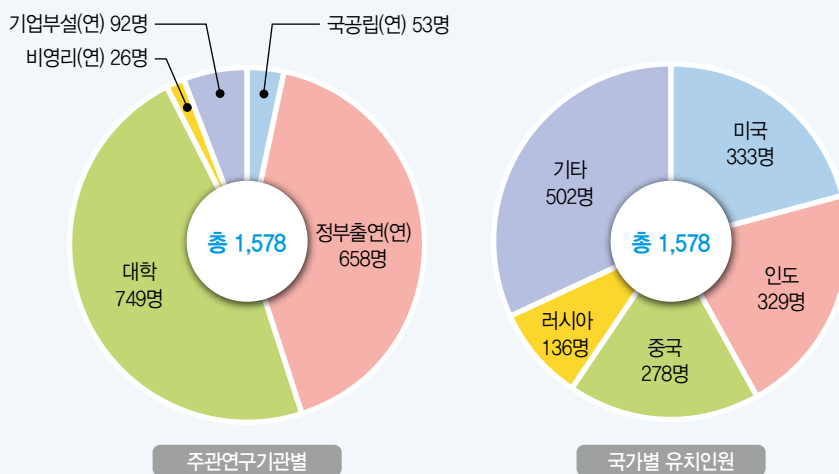
담당자 : 김민주 선임연구원, 이영옥 연구원 ☎ 02-3420-1252, 1254

E-mail : brain@kofst.or.kr Fax : 02-563-4931



IV. 사업실적 (1994~2012년)

1. 해외고급과학자 선정 현황



2. 국가별/분야별 선정 현황

국가명	분 야						계
	기초	기계·소재 · 항공우주	전기·전자 · 정보통신	화 공 · 생명과학	자원·해양 · 환경·건설	에너지	
멕시코				1			1
미국	96	41	38	104	33	21	333
브라질	1						1
캐나다	12	5	2	9	8	1	37
페루				1			1
소 계	109	46	40	115	41	22	373
그리스		1			1		2
네덜란드			1	2	1		4
덴마크				1			1
독일	7	3	1	6	3	5	25
루마니아	4	1	8				13
리투아니아		1					1
불가리아	2		4	1		1	8
스웨덴	2			4	1	1	8



국가명	분야						계
	기초	기계·소재 · 항공우주	전기·전자 · 정보통신	화공· 생명과학	자원·해양 · 환경·건설	에너지	
스 위 스		2		1			3
스 페 인	1	1				1	3
슬로바키아				1			1
에스토니아			1				1
영 국	8	3	2	3	2	1	19
오스트리아	1				1	1	3
유고슬라비아				1			1
이 집 트	2	2		1	1	2	8
이 탈 리 아	1		1	2		1	5
체 코	1	1		1			3
튀 니 지	1						1
폴 란 드	3	2	3	3	1		12
프 랑 스	7	4	2	2	1		16
핀 란 드			1				1
헝 가 리		1					1
소 계	40	22	24	29	12	13	140
C I S	23	24	20	26	6	8	107
러 시 아	37	22	41	17	8	11	136
벨 라 루 스	1	3	3	1	5	2	15
아르메니아	2	1					3
아제르바이잔	1			2			3
우즈베키스탄	3			4			7
우크라이나	8	6	11	2			27
카자흐스탄	1						1
소 계	76	56	75	52	19	21	299
뉴 질 랜드	1	1	1	3			6
대 만	1	1		1			3
몽 골				6	1		7
방글라데시	2			2		1	5
베 트 남	4	1	1				6
스 리 랑 카		1					1
싱 가 포 르	1						1
이 라 크	1						1
이 란	1	1	1				3
이 스 라 엘		1					1
인 도	85	44	20	117	24	39	329
인도네시아		1					1
일 본	30	24	4	28	8	3	97
중 국	39	81	52	79	10	17	278
타 이 완						1	1
태 국						1	1
파 키 스 탄	1		2	4		1	8
필 리 핀				2	1		3
호 주	3	3	2	3	3		14
소 계	169	159	83	245	47	63	766
계	394	283	222	441	119	119	1,578